2019년 프리팁스(Pre-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 공고

우수 기술을 보유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초기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2019년 프리팁스(Pre-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투자자로부터 엔젤투자(seed)를 유치한 초기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향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예비 팁스(TIPS) 창업팀으로 육성

○ 전체 지원규모의 60% 이상을 지방소재 창업기업으로 선발하여 지방창업 생태계 활성화 및 지역 내 우수 기술창업 인재를 발굴

□ 사업내용

○ 투자자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사업화자금 1년간 최대 1억원 지원

- 지원기간 종료 시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에 대한 최종평가를 통해 사업수행 성공 여부 판정

2. 지원 개요

□ 지원규모 : 30억원 (30개 내외)

* 예산소진 시까지 추가 모집 예정이나,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축소될 수 있음

□ 지원내용

<프리팁스(Pre-TIPS) 창업기업 지원내용 >

지원 기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부담금	
		현금	현물
1년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70%)	총 사업비의 30% 이상	
		10% 이상	20% 이하

○ **자금지원** : 엔젤투자를 유치한 초기 창업기업에 사업 아이템 구체화를 위한 사업화자금 1년간, 최대 1억원 지원

* 정부지원금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기업별로 차등 지원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참고2)에 참여했던 경우, 기 지원받은 창업사업화자금 만큼 차감 후 지원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 및 사업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재료비 등으로 계상가능

○ **기타지원** : 엔젤투자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투자유치 실무교육 및 팁스 운영사를 대상으로 투자 IR 및 상담기회 제공

3. 지원 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초기 창업기업으로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업력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업력기준은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로부터 사업공고일까지 기간산정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 이력이 있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여부를 검토

① 대표자를 포함하여 상시 종업원 수 2인 이상

* 사업공고일 이후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기준(협약체결일까지 유지)

②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투자자로부터 총 1천만원 이상 투자유치

* 투자확약은 불인정, 투자계약 후 투자자로부터 주금납입 후 등기완료만 인정

** 투자자는 중기부 선정·등록된 팁스 운영사, 액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만 인정

< 투자자 범위 및 정의 >

투자자	정의
팁스 운영사	엔젤투자 재원을 보유하고 창업팀 선발, 투자, 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추고 있는 엔젤투자회사, 재단, 초기전문 벤처캐피탈, 선도벤처·기술대기업 등 (http://www.jointips.or.kr → PARTNERS에서 확인 가능)
액셀러레이터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창업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억부에 등록한 법인 (https://www.k-startup.go.kr → R&D →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록 제도에서 확인 가능)
개인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개인 또는 창업지원기관이 모여 결성한 조합

4. 지원제외 대상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창업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투자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창업기업의 자격이 신청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목적,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에 따른 제외업종을 영위하는 자(기업) → [참고1] 확인**

☞ **2017년(2016.12.30.)~2019년도 창업지원사업 계획 공고(2019.1.3.) 기준, '사업화' 분류에 포함된 사업에 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기업) → [참고2]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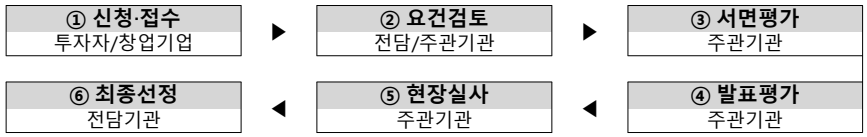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사업(글로벌 진출지원)' 예외(중복 참여 가능)

☞ **신청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등록 취소된 투자자**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5. 선정 절차

< 프리팁스(Pre-TIPS) 선정 절차 >



*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 지원계획 대비 신청기업 규모가 미달될 경우, 일부절차 동시 진행될 수 있음

1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9년 8월 5일 ~ 9월 2일 18:00

○ **신청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 사이트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투자계약서·투자금 납입내역, 주주명부, 투자사실확인서, 청렴서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기타 가점사항 증빙자료 등

* 사업계획서 양식 : [별첨] 서식 참조

< 가점·우대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 안내 >

※ 중소기업지원 정책정보시스템 기업마당(www.bizinfo.go.kr)에서는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 총 63종의 기업 인증·확인서 정보에 대해 개별기업이 보유중인 인증·확인서 현황 정보를 제공합니다.

※ 다음 절차를 참조하여 기업마당에서 조회되는 기업의 인증·확인서는 제출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기업마당에서 조회되지 않은 인증·확인서 증빙자료는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보유 인증확인서 조회 절차 :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접속 후 '기업마당 들어가기' 클릭 → 기업회원 로그인(미가입시 기업 회원가입) → 마이페이지 → 나의 지원이력 → 보유 인증제도 (각 메뉴명을 단계별로 클릭)

○ **온라인 신청절차**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절 차	회원가입	온라인 사업신청	정보입력 및 파일 업로드	접수확인 및 완료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

* 참여신청서는 온라인 내 기본사항 기재 시, 자동 생성
** 가점 관련 증빙서류는 사업신청 시 제출하며,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

< 온라인 신청 세부절차 >

① K-startup 접속 → ②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③ 사업신청관리 (자세히보기) 클릭 → ④ 사업신청 → ⑤ (예비)창업자 사업공고 신청, 프리팁스 클릭 → ⑥ 신청서 작성하기 → ⑦ **정보 입력** → ⑧ **사업계획서 업로드**(용량제한 20MB 유의) → ⑨ **증빙서류 업로드** → ⑩ 제출 → ⑪ 신청내역조회(**'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K-startup(구. 창업넷) 사이트 기존 가입자는 '② 회원가입' 생략
** 온라인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창업기업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2 요건검토 (전담/주관기관)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창업기업의 기본 신청자격(지원대상, 투자계약, 사업화과제 기지원·중복성, 업력 등) 및 제외대상 여부, 가점* 등 검토

* 가점은 사업신청 시 증빙서류가 완료된 건에 한하여 인정

< 가점 항목 및 점수 >

구분	평가내용	가점
가점 (최대 5점)	1) 팀창업 (3인 이상)	1점
	2) 4차 산업혁명 15대 핵심기술 과제	1점
	3) 스톡옵션 도입 및 운영	각 1점
	4)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1명당 1점
	5)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1점

3 서면평가 (주관기관)

○ 아이템의 문제인식(30%), 해결방안(30%), 성장전략(20%), 팀 구성(20%), 투자계약 적정성 등을 평가 후 발표평가 대상으로 추천

○ 평가항목별 기준점수(60%) 미달 시 종합평점과 관계없이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

4 발표평가 (주관기관)

○ 신청기업 대표자의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아이템의 사업성(50%), 기술성(30%), 사업추진의지(20%)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항목별 기준점수 미달 시 종합평점과 관계없이 현장실사 대상에서 제외

* 지원계획 대비 신청기업 규모가 미달될 경우,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를 동시진행 될 수 있으며, 가점은 발표평가 점수에 합산하여 종합평점 산정

5 현장실사 (주관기관)

○ 사업계획서 및 투자계약 관련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정밀 검토하여, 필요시 현장실사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 추천

○ 가장납입, 허위서류 등 제출자료 내용과 다른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후순위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실시

6 최종선정 (전담기관)

○ 각 단계 평가를 모두 통과한 창업기업에 대해 종합평점,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기업 및 선정기업별 정부지원금 확정

○ 선정된 창업기업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전체 지원규모의 60% 이상을 지방소재(서울·경기·인천 제외) 기업으로 선정

* 소재지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소재지(본사)로 구분

6. 선정자의 의무

□ 선정기업은 운영지침 및 사업비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지침 및 기준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 선정기업은 선정된 이후라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거나 허위 사실로 선정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협약(선정) 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

□ 선정기업은 사업비 오·유용, 부정·불법집행의 사전 예방을 위한 정기교육(연간 2회)에 연 1회 이상은 필수 참석하여야 하며, 미참석 시 (현장)특별점검을 받을 수 있다.

□ 선정기업은 창업진흥원, 한국엔젤투자협회가 요청하는 자료제출, 중간점검, 최종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선정기업은 전담·주관기관의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의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협약 종료 다음해부터 5년간 지원성과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7. 신청시 유의사항

1 온라인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 공동대표 중 한명으로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진행

○ 공동대표의 창업이력, 중기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수행여부, 기수혜여부도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대표자 전원이 '신청(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공동대표가 중기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했던 경우, 기 지원받은 창업사업화 자금만큼 차감 후 지원 (세부내용 참고2 확인)

○ 사업계획서 작성 시 공동대표의 경력/이력/창업사업화지원사업 수혜이력 모두 기재해야하며, 공동대표에 대한 신청자격 및 지원 제외 대상여부 확인을 위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필히 제출

○ 과제명은 사업계획서 내 과제명으로 동일하게 기재

○ 회원기본정보에서 소속기업은 "현재" 소속기업명으로 기재

* 이전 소속기업으로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 불인정

○ 가점신청 시 2점 이상 신청할 경우, 반드시 해당 가점 모두 선택

가점 세부 항목 및 점수	가점사항(온라인) 신청 방법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1명당 1점) * 2명 이상일 경우, 2점이상 신청 가능	⇒ 두 개 가점사항 체크 요망(총 5점) ■ 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1명 가입) [1점] ■ 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2명 이상 가입) [1점]
스톡옵션제도 도입기업(도입 1점) * 스톡옵션제도 운영 시, 2점 신청 가능	⇒ 두 개 가점사항 체크 요망(총 2점) ■ 스톡옵션 제도 도입 기업 [1점] ■ 스톡옵션 제도 운영 [1점]

3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등

○ 고용실적(일자리창출) 증빙서류는 '16~'18년 말 기준으로 발급 가능한 4대사회보험 서류만 인정

* (예)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득실확인서

○ 가점항목 중 4차 산업혁명 15대 핵심기술분야 신청 시, 사업계획서에 전략분야 및 전략제품명 모두 기재 (세부내용 참고3 확인)

○ 사업계획서 내 "5-1. 사업 추진 목표" 작성 시, 시제품/서비스/플랫폼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작성(사업기간 1년)

8. 문의처

구분	담당기관	연락처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창업성장본부 민관협력부	02-3440-7309
주관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TIPS사업본부 TIPS평가팀	02-3440-7422, 7428, 7439
시스템 문의(기타)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홈페이지	www.jointips.or.kr, www.k-startup.go.kr	

참고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에 따른 제외업종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참고 2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 창업선도대학 육성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 선도벤처연계기술창업
○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
○ 스마트벤처캠퍼스(舊 스마트벤처창업학교)
○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 (3단계)
○ 창업성공패키지(舊 청년창업사관학교)
○ 창업인턴제 (사업화)
○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재도전성공패키지)
○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집중·육성)
○ 스마트창작터 사업화 지원
○ 민관공동 창업자발굴 육성(TIPS연계지원)
○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
○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 창업맞춤형사업
○ 외국인기술창업지원
○ 기타 지원제외 대상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판단한 사업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중복선정 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사업 수행**

☞ 단, 각 사업의 협약체결 지정일 이내에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미체결 시 자동으로 사업 참여 포기 처리

*** 위 사업과 프리팁스의 협약기간 중복 불가**

☞ 단, 위 사업의 협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참여 가능

*** 선정 이후 사업수행 중, 중복여부 재확인 시 '지원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참고 3 중소기업 4차산업혁명 15대 핵심기술 분야

전략분야	No	전략제품명
AI /빅데이터	1	음성인식 SW
	2	영상처리 시스템
	3	인공지능 플랫폼
	4	인지과학 SW
	5	빅데이터 기반 SW
	6	Cloud Brokering
	7	Cloud service
	8	가상화/컨테이너
5G	1	초고속단거리 무선통신부품
	2	SDR기반 5G 무선전송 및 접속 기술
	3	5G 프론트홀·백홀 기술
	4	5G 코어 네트워크 기술
	5	massive MCT 기술
	6	5G 무선 접속을 위한 RRH 기술
	7	고속이동체를 위한 초고속 인터넷 제공 기술
정보 보호	1	생체인증
	2	클라우드 보안
	3	사물 인터넷 보안
	4	모바일 보안
	5	스마트 산업제어시스템(ICS) 보안
	6	지능형 자동차 보안
	7	지능형 보안위협 대응
	8	블록체인/블록체인 기반 보안
	9	지능형 영상보안
지능형 센서	1	광학부품 및 기기
	2	반도체 검사장비
	3	반도체 공정장비
	4	반도체 패키징 소재
	5	전력반도체소자
	6	고주파 반도체
	7	SoC 부품
	8	반도체 센서
	9	반도체 화학 소재
AR/VR	1	AR·VR 응용 서비스 플랫폼
	2	실사 기반 AR·VR 영상 입력 장치
	3	과업 특화형 개인 AR·VR 디스플레이 도구
	4	AR·VR 서비스용 콘텐츠
	5	AR·VR 오감 인터랙션 시스템
	6	공간형 AR·VR 디스플레이 솔루션
	7	AR·VR 콘텐츠 제작용 소프트웨어
스마트 가전	1	피코 프로젝터
	2	스마트 미러
	3	에어가전
	4	스마트 콘센트 및 플러그
	5	스마트 비서
	6	융·복합형 정수기
	7	스마트 키친 디바이스
	8	고효율 난방기기
로봇	1	인간 친화형 협동로봇
	2	착용형 근력증강 웨어러블 로봇
	3	산업용 부상방지 및 작업지원 로봇
	4	물류 로봇
	5	스포츠 시뮬레이터 로봇
	6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근력 보조 웨어러블 로봇
	7	소셜 로봇 플랫폼 및 서비스
	8	가전 로봇
미래형 자동차	1	운전자용 편의시스템
	2	자율주행 차량용 카메라
	3	정보제공 시스템
	4	자율주행자량의 Lidar
	5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6	친환경 경량화 부품
	7	전력변환 시스템
	8	전기구동 시스템
	9	에너지 저장/관리 시스템
스마트 공장	1	스마트 제조 애플리케이션
	2	센서 및 화상처리 기술
	3	스마트 제조 CPS
	4	제조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5	스마트 제조 AR/VR
	6	3D 프린팅 제조 시스템
	7	산업용 고신뢰/저전력 네트워킹
	8	스마트공장 플랫폼
바이오	1	유전체분석 및 정보분석
	2	바이오칩
	3	분자진단
	4	면역화학진단
	5	웰빙 전통식품
	6	건강 기능성 식품 소재
	7	기능성 화장품
	8	아토피개선 화장품
	9	부착형 화장품
웨어러블	1	스마트 시계/밴드
	2	스마트 신발
	3	스마트 의류
	4	스마트패치
	5	생활약자보조 착용기기
	6	실감·체험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7	레저·스포츠용 웨어러블 디바이스
	8	휴대용 생체인증기기·시스템
물류	1	물류 로봇·드론 관제시스템
	2	소형지게차 기술
	3	스마트 화물이동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4	스마트 패키징 시스템
	5	배송물류 라우팅 지원시스템
	6	스마트 물류창고
안전	1	안전사고 대응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
	2	지능형 화재안전 대응 시스템
	3	유해물질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
	4	범죄 대응 시스템
	5	센서형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
	6	미세먼지 측정 시스템
에너지	1	대기오염 물질 처리 소재 및 공정
	2	수처리 공정 전처리 설비
	3	재활용 폐기물 분리 및 재사용 설비
	4	연료전지용 M-BOP
	5	xEMS 시스템
	6	소규모 분산자원 중개 시스템
	7	폐열에너지 활용 시스템
	8	제조업 부생가스 재활용
	9	레독스 플로우 배터리
	10	초고용량 커패시터
	11	이차전지 전해질
	12	태양광 발전시스템
	13	태양광 공정장비
	14	건물 일체형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15	소형풍력발전기
스마트홈	1	생활밀착형 스마트 디바이스
	2	스마트홈 서비스 플랫폼
	3	스마트 통합형 홈 네트워크 연동기술
	4	홈/빌딩 지능형 공간 서비스
	5	지능형 HEMS

참고 4 프리팁스 사업화자금 집행 비목

비목	비목 정의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의 제품(서비스) 제작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제품(서비스)를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SW 등)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인건비	•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사업화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 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대표자는 현물 계상만 가능)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사무실임대료,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회계감사비) ※ 회계감사비 30만원 산정 필수
여비	• 창업기업 소속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사업장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